

「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품종 감정」 입찰 공고문

(2026. 6. 15.)

 **농협경제지주**

양 곡 부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- ☐ 사 업 명 :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
- ☐ 사업내용 : 유전자마커(SNP maker)를 활용한 공공비축 벼 품종 검정 및 친환경 벼 단백질 함량 검사
- ☐ 사업기간 : 계약일 ~ 2027. 7. 31.
- ☐ 입찰방법 : 일반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), 청렴계약제 시행대상

2. 입찰 참가자격

- ☐ 본 개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종사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농협경제지주·계열사 또는 농·축협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
- ☐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99조(검정기관의 지정 등)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
- ☐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
- ☐ 「공동계약운용요령」(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, 2026.1.2.)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제도 가능

3. 입찰 참가방법

- ☐ 제안서 접수기간 : 2026. 6. 15.(월) ~ 7. 27.(월)
- ☐ 접 수 처 :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
- ☐ 접수방법 : 전자입찰
- ☐ 제출서류 :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는 제안서 및 제반 서류

4. 입찰의 무효

- ☐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입찰 조건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함
(농협경제지주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)

5. 낙찰자 결정방법(절차)

- ☐ 기술능력 평가(80%)와 입찰가격 평가(20%)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
- ☐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(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)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%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
- ☐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와 협상

6.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

- ☐ 입찰금액(제안금액)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시까지 납부하여야 함
- ※ 입찰금액(제안금액)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
- ☐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동 입찰보증금은 농협경제지주에 귀속 됨

7. 기타 참고사항

- ☐ 제안서 내용,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은 별첨(제안요청서) 참조
- 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안 및 심사 관련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
- ☐ 입찰자는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, 내용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
- ☐ 기타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, 농협경제지주 계약관련 제규정에 의함
- ☐ 기타 사항은 농협경제지주 양곡부 박숙희 계장보 문의(☎ 02-2080-6283)

(별첨)

NH NongHyup

새로운
대한민국 농협

「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품종 검정」 제안 요청서

(2026. 6. .)

 농협경제지주

양 곡 부

목 차

I. 일반사항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	1
2. 제안참여업체 자격	1
3. 공동계약	1
4. 낙찰자 결정방법	2
5.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	2
6. 제안서 평가	2
7. 계약 특수조건	5
8. 사업예산	6
9. 추진 일정(안)	6

II. 업무 주요내용

1. 공공비축벼 품종검정 업무개요	7
2. 업무 세부사항	7
3. 기관별 업무 역할	8

III. 제안서 작성요령

1. 작성지침	9
2. 내용	9
3. 제출방법	9
4. 효력	10
5. 유의사항	10

- 붙임 1. 제안서 목차
2. 벼(쌀) 품종 검정 매뉴얼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- 입찰대상 : 2026년산 공공비축 매입 벼의 품종 위탁검정 업체
- 사업량 : 품종검정 및 친환경 벼 단백질 함량 검사 약 6.6천건(예정)
 - * '27년 관련 예산 최종확정 전으로 품종검정비 물량·단가 변동 가능
- 사업기간 : 계약일 ~ 2027. 7. 31.
 - * 수확기(9월~12월)에 검정 시료가 채취됨에 따라 업체 선정 완료 후 시료를 송부하고, 선정된 업체는 사업기간 내 보관된 시료에 대해 검사를 진행함
- 계약방법 :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(단가 협의·계약)

2. 제안참여업체 자격

-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99조(검정기관의 지정 등)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
-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
- 「공동계약운용요령」(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, 2026.1.2.)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도 가능

3. 공동계약

- 본 입찰은 공동계약(공동이행방식)이 가능
 - －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가능
 - －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10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,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% 이상
 - －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

4. 낙찰자 결정방법

- 공개경쟁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적격 업체(기관) 선정
 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3조 및 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」(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, 2026.1.2.)을 준용
- 적합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기술과 가격을 종합하여 평가
 - 제안업체(기관)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(80%)와 입찰가격평가(20%)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업체(기관)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
-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

5.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

- 제안서(200매 이내) 및 요약본(30매 이내) 각 5부
-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99조(검정기관의 지정 등)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지정서 사본
- 위탁분석 물량에 대하여 사업기간 내에 처리 할 수 있는 시설·장비·인력의 요건 등을 확보하였음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
 - *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관별 지분율을 포함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

6. 제안서 평가

가.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

- 제안서의 평가는 업체(기관)별 벼·쌀·현미 품종 검정능력(과거실적), 조직 및 인력, 장비,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수준을 고려한 「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」에 따라 평가

<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>

구분			평 가 항 목	배점	비고
기술 평가	정량적 평가	일반사항	○ 사업수행실적 - 벼·쌀·현미 품종검정 사업수행실적	8	증빙자료 첨부
	정성적 평가	일반사항	○ 제안서 내용의 적합성 및 충실성	8	
		사업수행계 획	○ 사업시기별 장비·인력 등의 운영 방안 ○ 분석계획 등 수행능력 ○ 시료, 검정 및 결과 등의 관리 절차 ○ 사업수행 절차의 구체성	32	
		분석시설· 장비	○ 분석 장비의 보유, 관리 수준의 적절성 ○ 분석장비 운용을 위한 시설현황 및 관리수준의 적절성	16	
		인력·조직 관리	○ 계약물량 처리에 적합한 검정인력 확보 내역 ○ 검정인력 분석능력 관리의 적절성 ○ 분석 및 결과조치 등에서의 관리감독 방식의 적절성	16	
가격 평가			○ 업체가 제시한 건당 검정비용	20	
감점 사항			○ 감독관청으로부터 품종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 '시정'조치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	-5	
합 계				100	

※ 검정인력은 농관원에서 인정한 인력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함

< 배점 부여방식 >

구 분	매우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미흡
0.2간격	배점 × 1.0	배점 × 0.8	배점 × 0.6	배점 × 0.4	배점 × 0.2

< 사업수행실적 평가 기준 >

평가항목	평가등급
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사업수행실적 (1,000건)	매우우수 100%이상
	우수 70%이상 ~ 100%미만
	보통 40%이상 ~ 70%미만
	미흡 10%이상 ~ 40%미만
	매우미흡 10%미만

※ 사업수행실적은 발부된 '쌀·현미 품종 검정 성적서'에 한하여 인정함

※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
실적으로 최종 평가

(예) {(A사 실적×A사 지분율)+(B사 실적×B사 지분율)…}에 대한 점수

< 가격 평가 기준 >

기준 (건당 검정비용)	최저비용 업체	최저비용 업체 대비			
		120%이하	140%이하	160%이하	160%초과
점수	20	18	14	10	6

나. 평가절차

-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
-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업체별 종합점수를 산정
- 기술능력평가(80%)와 입찰가격평가(20%)를 종합평가한 결과가 높은 업체(기관)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
 -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최종 계약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,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물량·단가 재협상

다. 제안서의 효력

-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,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
- 협상에서 요구되어 별도로 제출된 내용도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

라. 유의사항

-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
-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
-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
- 제안서 및 이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제안요청서에서 특별히 증빙서 제출 등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안서에 수용불가 함을 적색으로 명시하여야 함
-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음

7. 계약 특수조건

- 계약업체(기관)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발주자는 계약이행상황을 월 1회 이상 감독·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고, 시료 접수내역 및 분석 결과 증빙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발주자는 계약업체(기관)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'26년 12월 이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- * 단,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정부 일정에 따라 지급
- 시료 운송 택배비는 계약업체(기관)가 부담한다.
 - 시군 공공비축 업무담당자는 분석시료를 수거하여 착불로 계약업체(주관기관)에 송부한다.
- 계약업체(기관)는 발주자가 정한 분석 방법에 따라 시료를 분석하여야 하며, 분석법 습득을 위해 필요시 분석담당자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벼(쌀) 품종검정 방법
 - 농관원장이 정하는 벼(쌀) 품종검정 방법(붙임2 참조)
 - * 농관원에서 인정한 동일한 결과 도출이 가능한 방법의 사용도 가능
- 계약업체(기관)는 시·군으로부터 시료를 접수하고,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검정결과를 통보하되 100건씩 묶어서 통보한다.
 - 검정성적서는 3개 기관(농식품부, 해당 시·군, 농협)에 동시에 전자메일로 통보한다.
- 계약 이행상황 점검 및 지적사항 준수
 - 발주자가 실시하는 계약 이행상황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계약업체(기관)는 즉시 개선해야 한다.
- 다음의 경우 계약업체(기관)가 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- 계약 이행상황 점검 및 정도관리 결과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
 - 점검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으로 3회 이상 잘못된 분석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(단,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분석오차 범위 이내인 경우 제외)
 - 계약업체(기관)는 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.

- 분석결과 오류, 내·외부적 활용 및 자료 유출로 인해 발생한 민·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업체(기관)에게 있다.
-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착수보고와 최종완료 시 완료보고를 실시할 수 있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업체(기관)가 부담한다.
 - 완료보고서는 공공비축벼의 품종검정 개요, 분석기관 현황, 분석장비 및 분석방법, 분석실적 평가·분석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 - 분석결과 데이터(Raw Data)는 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.
- 계약업체(기관)는 정산금액에 대한 검증·감사를 위해 검사 관련 소요비용 지출증빙자료를 발주자 및 검증·감사 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.
- 제안서 및 위의 내용에 없는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르며,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은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8. 사업예산

- '26년산 품종검정 사업예산 : 약 1,511백만원(미확정)

* '27년 품종검정비 예산 최종 확정 전으로 사업액(물량, 단가)은 추후 변동 가능

9. 추진 일정(안)

구 분	월 별 추진일정				
	6~7월	8월	9월	'27.1~6월	'27.7월
공고 및 제안서 입찰					
기술제안서 평가					
업체 선정 및 가격 협상					
시료 의뢰 및 접수					
시료 분석 진행 및 결과 보고					
최종결과 보고서 제출					

Ⅱ

업무 주요내용

1. 공공비축미 품종검정 업무개요

가. 사업목적

- 다수확 품종을 매입 대상 품종에서 제외하여 쌀 수급 안정 및 고품질 쌀 생산·유통 확산 도모

나. 사업내용 : 공공비축 매입 벼 품종검정 및 친환경 벼 단백질 함량 검사

다. 사업기간 : 계약일 ~ 2027. 7. 31.

2. 업무 세부사항

가. 벼 품종 검정 및 친환경 벼 단백질 함량 검사 위탁 업무 내용

- 대상 및 기간 : 2026년산 공공비축 벼 / 계약일 ~ '27. 7. 31.
- 사업량 : 품종검정 및 친환경 벼 단백질 함량 검사 약 6.6천건(예상)
 - * '27년 관련 예산 최종확정 전으로 품종검정비 물량·단가 변동 가능
- 업무내용 : 유전자마커(SNP maker)*를 활용한 벼 품종 검정 및 친환경 벼 단백질 함량 검사
 - * 1점의 시료에서 균분을 통해 24립을 분석하여 품종별 혼입비율 산출
 - ** 세부적인 분석방법은 (붙임2) 농관원 「벼(쌀) 품종 검정 매뉴얼」 준수
- 시료 수거 및 송부
 - － 시·군 공공비축벼 매입 업무 담당자가 수시로 시료를 수거하여 위탁 업체에 택배로 송부하고, 택배비는 계약업체(기관)이 부담(착불)
- 분석 결과의 통보
 - － 위탁기관 분석 시료 접수 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(공휴일 포함) 분석결과 통보
 - － 통보는 메일로 하되 100건 단위로 3개* 기관에 동시에 제출
 - * 농식품부, 해당 시·군, 농협 (기관별 메일 주소는 추후 알림)
 - － '26년산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·제출 : '27. 7월까지

나. 계약업체(기관) 기타 준수사항

○ 벼 품종검정에 필요한 시설·장비·인력 확보

- * 시설·장비·인력은 위탁분석 계획물량에 따른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술평가 시 확인

○ 분석결과 관리체계

- 분석결과는 분석 담당자, 기술책임자 등의 결재 계통을 통한 점검·확인이 시스템적으로 관리되는 체계 유지
- 위탁분석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주관기관이 가짐
- 분석결과 자료는 내·외부적 활용 및 유출을 금지

○ 수행계획서 제출

- 계약업체(기관)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·장비 등의 운영계획을 명시한 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

○ 검증 및 감사 증빙자료 제출

- 정산금액 검증·감사를 위해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관련 지출증빙자료를 검증·감사 수행기관에 제출

3. 기관별 업무 역할

○ 농협경제지주 : 공공비축벼 품종 검정기관 선정 및 위탁 계약

○ 농관원 : 공공비축벼 품종 검정 제안서 검토 협조 및 계약업체에 대한 검정법 교육

○ 농식품부 : 품종검정 결과 위반 농가 공공비축 참여 제한

○ 시·군 : 공공비축벼 매입현장에서 시료 수거 및 계약업체 배송

○ 위탁분석기관 : 공공비축벼 품종 검정 및 결과 기록관리

- 시·군에서 의뢰하는 공공비축벼에 대한 품종검정
- 시료접수 후 90일 이내 품종검정을 완료하고, 100건 단위로 결과 통보

Ⅲ 제안서 작성요령

1. 작성 지침

-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시하고, 그 내용을 상세히 기술
- 건당 검정비용을 원단위로 기입
-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붙임 자료로 작성
- 용지규격은 A4크기로 바인더 사용(제본하지 말 것)
 - － 한 쪽당 최대 45줄을 넘지 않게 하고, 각 쪽에는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총 쪽수(별지 제외)는 200매 이내로 흑백으로 인쇄하고, 제안서 요약 분은 30매 내외로 하되, 칼라로 작성 가능
 - － 개발/기술근거자료, 회사 카달로그, 기타 관련서류는 제안서에 첨부
-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, ‘~를 제공할 수도 있다’, ‘~이 가능하다’, ‘~을 고려하고 있다’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사용 자제
-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 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, 삭제 및 대체 불가

2. 내 용

- 「붙임 1」의 『제안서의 목차』참고

3. 제출방법

- 가. 기한 : 입찰공고 참고
- 나. 장소 : 입찰공고 참고
- 다. 서류 : 입찰공고 참고
- 라. 방법

-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를 통한 전자제출

4. 효 력

-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당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,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, 계약업체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
-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계약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. 단,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함

5. 유의사항

-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 기한 내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를 통해 제출
-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
-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
-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

붙 임 1. 제안서 목차 1부

2. 벼(쌀) 품종 검정 매뉴얼 1부. 끝.